

소상공인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

배달·택배비

지원사업



지원목적

-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배달·택배비를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

지원대상

- 연 매출액 0원 초과 ~ 1억 4백만원 미만
- 배달·택배비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(개인·법인)

■ 매출규모

'23년 또는 '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~ 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

■ 배달·택배비 실적

'24년 1월부터 '25년 12월까지의 배달·택배비 이용실적

■ 활동사업자

개업일이 2024.12.31. 이전이며,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·법인사업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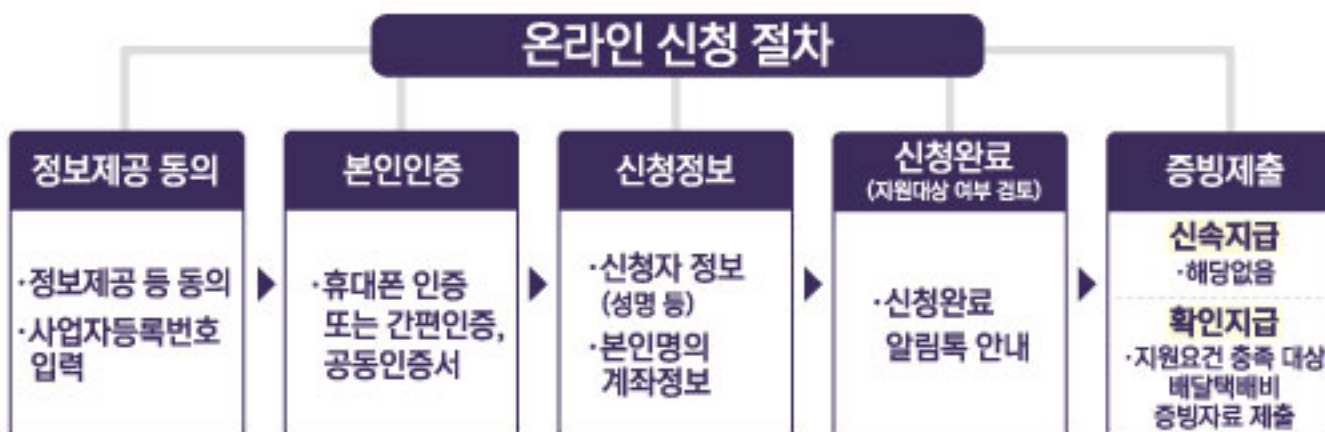
※ 현재 휴업 중이더라도, '24년 1월 이후 배달·택배 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

지원유형

구분	신속지급	확인지급
지원 대상	8개 배달플랫폼*(배달앱·대행 등)을 이용하고, 전산으로 배달비 실적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 * 배달의민족, 요기요, 쿠팡이츠, 생각대로, 바로고, 부릉, 인천반값택배, 먹깨비	①택배, 배달플랫폼 및 퀵서비스 등을 주로 이용 중이거나, ②직접배달을 하는 소상공인
증빙 자료	해당 없음	① 택배, 배달 플랫폼 등 - 객관적인 배달·택배비 이용실적 자료 * 전자(세금)계산서, 택배운송료 청구서, 배달·택배사 정산내역, 카드영수증(이영수증 불인정), 택배운송장 ② 직접배달 - 실제 배달여부 및 실적이 확인 가능한 자료 * 차량·오토바이 등록증 또는 렌트계약서, 이동식카드단말기 구매영수증 또는 (렌트)계약서, 포장용기구매내역, 배달이 명시된 전단지 또는 영입간판, 배달원료 사진·문자, 배달인수증(꽃배달·세탁물 등), 배달장부
신청 기간	'25년 2월 17일~	'25년 4월 21일~

신청방법

- 신청사이트 |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



- 확인지급 증빙등록 | '24.1.1. ~ '25.12.31. 까지 배달 또는 택배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등록
* 지원요건을 충족한 확인지급 대상자에 한하여 배달·택배비 실적 시스템 등록 가능
** 신속지급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지원요건 확인을 통해 지급여부 결정

- 의견제출 | 매출기준, 업종제한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류통보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

- 공 고 |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www.mss.go.kr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www.semas.or.kr

문의처

- 배달·택배비지원 콜센터 1533-0500
공단 통합콜센터 1533-0100
-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 (누리집) 챗봇 24시간 운영, 채팅상담

지원금액

- 최대 30만원 지원



▲ 신청 바로가기

